

#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실적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상반기 목표사업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였음.

## The Consultant

### ▣ 지도사 관계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도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회원 지도사들의 사회적 공신력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사관계법령 개정 추진 사업을 전개하여 이를 다음 같이 완수하였음.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

(법률 제7208호, 2004. 3. 22)

#### ○ 주요개정내용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근거를 법률로 신설  
(법제31조의 제1항)
-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신설  
(법제31조의 2)
- 지도사 등록요건의 실무수습 이수 의무를 법률로 신설  
(법제32조 제1항)
- 지도사의 갱신등록요건을 법률로 신설  
(법제32조 제2항)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지도사 자격취득후 등록미필자)에 대한 지도사 표시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법률로 신설  
(법제32조 제4항)
- 갱신등록 미필 지도사에 대한 지도사 업무금지를 법률로 신설  
(법제33조 제2항)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역

제31조의제목 “지도사”를 “지도사의 자격요건 등”으로 하고, 동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 자격시험(경영 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 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 면제·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지도사의 업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등록을 한 지도사가 아닌 자”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용어를”을 “명칭을”로 한다.

- 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지도사의 책임”을 “지도사의 성실의무”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6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지도실적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등록 하는 지도사부터 적용한다.
- ③ (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④ (지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신 ·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p><b>第31條(指導士)</b> ①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指導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者は 經營指導士 또는 技術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가 될 수 있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b>第31條(指導士)</b> ①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指導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者は 經營指導士 또는 技術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가 될 수 있다.</p> <p>②(생략)</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登錄을 할 수 있는 者は</p>	<p><b>第31條(지도사의 자격요건 등)</b> ①중소기업의 경영·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第31條의2(지도사의 업무)</b>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p>	<p><b>第31條(지도사의 자격요건 등)</b> ①중소기업의 경영·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p>
<p><b>第32條(指導士의 登錄)</b> ①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b>第32條(指導士의 登錄)</b> ①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b>第32條(지도사의 업무)</b>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p> <p><b>第32條(지도사의 등록)</b> 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31조의2의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p>	<p><b>第32條(지도사의 등록)</b> 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31조의2의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p>

현행	개정
<p><u>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指導實績이 있거나 教育을 받는 者이어야 한다.</u></p> <p><u>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가 아닌 者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임을 표시하고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⑤~⑥(생략)</p> <p><b>第32條의2(指導士의 責任)</b></p> <p>①~② (생략)</p> <p><b>第33條(登錄取消 및 資格停止)</b></p> <p>①(생략)</p> <p><u>②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登錄을 하지 아니한 指導士는 그 資格이 정지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修教育을 받고 更新登錄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資格이 회복된다.</u></p> <p><b>第61條(罰則) ① · ② (생략)</b></p> <p><u>③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資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b>第63條(過怠料) ① (생략)</b></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시는 産業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産業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지도시는 産業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u>④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3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b>第32條의2(지도사의 성실의무)</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b>第33條(등록취소 및 업무정지)</b></p> <p>①(현행과 같음)</p> <p><u>②제3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시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 후단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u></p> <p><b>第61條(罰則) ① · ② (현행과 같음)</b></p> <p>③ &lt;삭제&gt;</p> <p><b>第63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b></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32조제4항의 規定을 위반한 자</p>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시행령 개정

(2004. 5. 21 제2004-130호 입법예고)

(2004. 7. 9 차관회의)

(2004. 7. 14 국무회의)

###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04.3.22제 7208호」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운영상의 일부미비 사항 정비

### 2. 주요내용

#### □ 지도실시기관 지정 강화(안 제28조)

지도실시기관을 중진공 등 11개기관 외에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정하여 부실과 난립을 방지코자 함

#### □ 지도사 자격시험 신설(안 제31조)

○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절차, 시험과목, 실시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 지도사 자격시험 과목 확대 신설(안 제31조)

- 제1차시험 과목은 지도사의 기초적 자질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 소양 과목범위 확대(현행 4과목 → 6과목)

구 분	현 행	개 정
경영지도사	필수 4과목	필수 6과목
기술지도사	필수3과목 선택1과목	필수 6과목

- 제2차시험 과목은 지도분야별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시험과목을 현실화하여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현행 1과목 → 3과목)

구 분	현 행	개 정
경영지도사	해당분야 1과목	해당분야 3과목
기술지도사	해당분야 1과목	해당분야 3과목

#### □ 지도사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축소(안 제31조의2)

○ 현행 자동차·정보화 전공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그

외 이공계 전공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또한 자동화·정보화는 모든 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공통의 필수분야로 다른 이공계 기술분야와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삭제

#### □ 기타사항

- 지도사의 등록절차 개정 (안 제33조의2)
- 실무수습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 (안 제33조)
- 지도사 자격증 교부 신설 (안 제31조의2)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내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지도실시기관)** 제12호의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31조 내지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지도사 자격시험)** ①중소기업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사항
2.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주관기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과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별표와 같다.

④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을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⑤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시험의 면제)** ①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나목 내지 사목의 경력은 학위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 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나.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다.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마.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실무수습)** ①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의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자격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기간·비용 기타 실무수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수수료중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하여금”을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로, “교육이수 여부”를 “보수 교육 이수 여부”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특례)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6년도 12월 31일 까지는 제31조제3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지도사 자격시험 과목(제31조제3항 관련)

#### 1. 경영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1차 시험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2차 시험	가.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나.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다.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라. 판매관리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2. 기술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1차 시험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2차 시험	가. 기계분야 : 기계공학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나. 금속분야 :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다. 전기전자분야 : 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라. 섬유분야 :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마. 화공분야 :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바. 생산관리분야 : 품질관리, 생산계획, 수요관리 사. 정보처리분야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시험은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 ·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28조(지도실시기관)</b> 중소기업청장은 지도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1. ~ 11. (생략)</p> <p>12.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8조(지도실시기관) .....</p> <p>.....</p> <p>.....</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p> <p><b>제31조(지도사자격시험)</b> ①중소기업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사항</p> <p>2.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p> <p>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p> <p>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와 같다.</p> <p>④지도사자격시험의 1차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p> <p>⑤1차시험 및 2차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p> <p>⑥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31조의2(1차시험의 면제)</b>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p> <p>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나목 내지 마목의 경력은 학위취득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해당</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현행	개정
<p><b>제33조(지도사의 자격 및 등록)</b>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한 자로 한다.</p> <p>②삭제</p> <p>③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등을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p> <p>나.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p> <p>다.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p> <p>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p> <p>마.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p> <p>②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b>제33조(실무수습)</b>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의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p> <p>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자격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중에서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기간·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p><b>제34조(갱신등록)</b>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갱신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 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지도실적의 유무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b>제35조(지도사 자격시험)</b>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등을 참작하여 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나목 내지 사목의 경력은 학위취득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나.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로서 7년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바. 자동화·정보화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사. 자동화·정보화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실시주관기관,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4조(갱신등록)</b> .....                  .....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                  ..... 보수교육의 이수여부.....                  .....                  (삭 제)</p>	

산업자원부령 제 호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2004. 5. 21 제2004-130호)

(2004. 7. 9 차관회의)

(2004. 7. 14 국무회의)

###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7208호, 2004. 3. 22. 공포, 2004. 6. 23. 시행)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도사자격시험 및 1차시험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동법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관련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도사자격증) 영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를 “법제32조제1항”으로, “영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이하 “등록지정법인”이라 한다)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제12조 제4항”은 제12조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법제32조 제1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을 “그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으로,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한다.

제15조중 “영 제33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지정 법인”을 “영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이하 “등록지정 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5항 중 “자격정지사유”를 “업무정지사유”로 한다.

제17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 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지정 법인”을 “영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이하 “등록지정 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등)”을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단서 중 “자격정지처분”을 각각 “업무정지처분”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 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도자격분야 :

위 사람은 년 시행 제 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

하였으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의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특급) 120g/m<sup>2</sup>)

[별지 제18호 서식]

제 호

# ( )지도사 등록증

사진

3×4cm

성 명 :

지도분야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특급) 120g/m<sup>2</s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b>제12조(실무수습 실시)</b>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120시간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120시간이하로 할 수 있다.</p> <p>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자격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중에서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 기간 · 비용 기타 실무수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실무수습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3조(지도사의 등록)</b>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이하 “등록지정법인”이라 한다)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수료증 사본</p> <p>3. (생 략)</p> <p>②등록지정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송부하</p>	<p><b>제10조(지도사자격증)</b> 영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p> <p><b>제12조(실무수습수료증)</b>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p> <p><b>제13조(지도사의 등록)</b> ①법 제32조제1항.....</p> <p>.....</p> <p>.....</p> <p>..... 중소기업청장에게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2조 .....</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여야 한다.</p> <p><b>제14조(지도사등록증의 교부)</b>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u>자인</u>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서를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b>제15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b> 지도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6조(갱신등록)</b> ① (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외 장기체류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③·④ (생 략)</p> <p>⑤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17조(지도실적)</b>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적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이상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p> <p><b>제18조(보수교육등)</b>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20시간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이상이거나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p>			<p><b>제14조(지도사등록증의 교부)</b> ① .....</p> <p>.....</p> <p>.....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은 자 .....</p> <p>.....</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b>제15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b> ..... 법 제32조제1항</p> <p>.....</p> <p>.....</p> <p>.....중소기업청장에게.....</p> <p>.....</p> <p><b>제16조(갱신등록)</b>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이하 “등록지정법인”이라 한다)</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업 무정지사유.....</p> <p>.....</p> <p><b>제17조(지도실적)</b> 법 제32조제3항 전단.....</p> <p>.....</p> <p>.....</p> <p>.....</p> <p><b>제18조(보수교육)</b> ①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p> <p>.....</p> <p>.....</p> <p>.....</p>

